〈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 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082] [ssceo76@hanmail.net]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년 1월 30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년 12월 31일]

[오늘통닭]

정 보 공 개 서

[(주)대현푸드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 . .

[(주)대현푸드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 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 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 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 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 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 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 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 강북구 번1동 464-8 오늘통닭 본점 2층]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02-900-8861]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991-8861]

[가맹본부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 02-900-8861]

목 차

인사말인사말	- 1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6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10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7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9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0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4
※ 별첨서류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별첨2]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첨4]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주)대현푸드빌 대표 김종현 입니다.

1977년 7평 남짓한 작은공간에서 삼성통닭(現 오늘통닭)은 출발했습니다.

43년 전 그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쉼 없이 정갈하고 맛있는 통닭으로 고객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43년이면 강산이 약 네 번바뀌는 세월입니다.

그 동안 오일쇼크, IMF위기, 또 개인사의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여러 고객들의 아 김없는 사랑과 통닭을 통해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삼성통닭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수고를 알아주는 것의 표시인지, SBS "해결 돈이 보인다. 30회 통닭편"에 대박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43년의 Know-How를 여러 점주 여러분과 공유하며 가맹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43년 동안 정직과 성실을 가맹사업에도 고스란히 담아낼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가맹점주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 최상의 품질과 맛으로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간, 삼성통닭이 상표등록이 불허한 관계로 2011년 11월 oh늘통닭으로 상표등록을 하여 oh늘 통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맹점주 여러분과 서로 상생하며, 고객에게는 최상의 서비스가, 가맹점주 여러분에게는 노력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 돌아가는 가맹본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oh늘통닭		2월 일 2월	가 ㅂ.	그 비1도	161 0	ο느토	닭본점 2층
 (주)대현	(구) 삼성통닭	ŀ	시물시	る 玉	丁 1115	404-8	アラス	된 는 점 2·5
(T) 네 원 - 푸드빌	법인설립등기일	사약	법자등록일	τ	H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十二宣	2009. 10. 21	200	2009. 10. 28		김종현	02-900	-8861	02-991-8861
	법인등록번호	11	110111-42082		사업자등	·록번호	210	0-81-6336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기조처	oh늘통닭	,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64-		
 대표이사	김종현	(구) 삼성통닭		오늘통닭 본	점 2층	
네효의사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	0.21 [~] 현재	김종현	02-900-8861	02-991-8861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손영순	oh늘통닭	,	서울시 강북구 번	1동 464-8	
사내이사	는 영군	(구) 삼성통닭		오늘통닭 본	점 2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0.21~현재		김종현	02-900-8861	02-991-8861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최지현	oh늘통닭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64-8			
사내이사	의시원	(구) 삼성통닭		오늘통닭 본	점 2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	0.21 [~] 현재	김종현	02-900-8861	02-991-8861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소여스	oh늘통닭	,	서울시 강북구 번	1동 464-8	
감사	손영숙 (구) 삼성통닭			오늘통닭 본	점 2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	0.21~현재	김종현	02-900-8861	02-991-886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JH푸드빌	oh늘통닭 (구)삼성통닭	2009년 10월 28일	서울 강북구 번1동 462-110	김종현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oh늘통닭(구)삼성통닭]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oh늘통닭	창업주의 의지가 표현됨
상 호	oh늘통닭 OO점	
상표(서비스표)	ON THE REAL PROPERTY OF THE PARTY OF THE PAR	등록일 : 2011년 8월 12일 등록번호 : 410215062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3년	3,245,105	2,105,870	1,139,234	3,887,633	-31,064	7,331
2022년	3,190,214	2,058,311	1,131,902	3,336,095	13,371	6,051
2021년	3,121,527	1,995,675	1,125,851	1,893,200	-32,083	4,45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n =	=1 -1 A1		사업경력	
3	이름	현 직위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김종현	대표이사	2009.10.~현재	(주)대현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 영업,관리 회사 업무 총괄
임원	최지현	이사	2009.10.~현재	㈜대현푸드빌 이사	회계, 재무
가맹사업	손영순	이사	2009.10.~현재	㈜대현푸드빌 이사	삼성통닭 창업주
비관련 임원	손영숙	감사	2009.10.~현재	㈜대현푸드빌 감사	생산, 감독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기이스/면)
시설 L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4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 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김종현	가맹사업 경영	2009.10.~현재	OH늘통닭(구,삼성통닭)이 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전문점 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배우자)	최지현	(주)대현푸드빌 이사로 재직	2009.10.~현재	OH늘통닭(구,삼성통닭)이 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전문점 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모)	손영순	(주)대현푸드빌 이사로 재직	2009.10.~현재	OH늘통닭(구,삼성통닭)이 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전문점 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이모)	손영숙	(주)대현푸드빌 감사로 재직	2009.10.~현재	식자재 생산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영업 목적사용	2011.02.18. 출원 2011.08.12. 등록		·(주)대현푸드빌	2031.08.1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8년 09년 01일

(본점을 시작한 날 : 1977년 7월 1일)

2. oh늘통닭 (구)삼성통닭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삼섯톳닦	oh늘통닭 (구)삼성통닭	손영순	1977.7.1.~2009.10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64-8
(주)대현푸드빌	oh늘통닭 (구)삼성통닭	김종현	2009.10.~현재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64-8 오늘통닭 본점2층

3. [오늘통닭] 업종

영업표지	업종		
ムレモロ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오늘통닭	치 킨	치 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 중인 [oh늘통닭 (구)삼성통닭]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1.12.3	1.	2	022.12.3	1.	2	023.12.3	1.
시키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9	49	-	80	80	_	72	72	_
서울	16	16	_	18	18	_	15	15	_
부산	-	_	_	3	3	_	2	2	_
대구	1	1	_	2	2	_	2	2	_
인천	3	3	_	-	_	_	-	_	_
광주	_	_	_	2	2	_	1	1	_
대전	2	2	_	2	2	_	3	3	_
울산	1	1	_	1	1	_	1	1	_
세종	1	1	_	2	2	_	2	2	_
경기	10	10	_	24	24	_	24	24	_
강원	4	4	_	6	6	_	7	7	_
충북		_	-	1	1	_	1	1	
충남	4	4	_	6	6	_	4	4	_
전북	1	1	_	5	5	_	3	3	_



전남	1	1	-	4	4	-	2	2	-
경북	3	3	_	1	1	_	_	_	_
경남	2	2	_	3	3	_	5	5	_
제주	_	_	_	_	_	_	_	_	-

5. 최근 3년간 [oh늘통닭 (구)삼성통닭]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80	33	13	28	6	72
2022	49	49	6	12	0	80
2021	54	31	7	29	0	49

- 6. [oh늘통닭 (구)삼성통닭]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오늘통닭]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식: (소비자가격(18,000원)*육계공급량*1.7(전체 매출액에서 육계의 비율 30%)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20	023년 가명	맹점사업지	가의 연간	평균 매출	출액	
지역	년 말 가맹 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비고
전체	72	214,698	7,830	1,813,7 62	41,856	6,576	131	56곳 산정
서울	15	466,939	11,654	1,813,7 62	41,856	24,293	843	14곳 산정
부산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2	해당없음	_	_	_	-	_	5곳 미만
인천	0	_	_	_	_	_	_	_
광주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3	해당없음	_	_	_		_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_	_	-	_	_	5곳 미만
세종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기	24	169,390	7,054	594,298	19,895	6,576	131	17곳 산정
강원	7	112,991	6,392	236,589	9,185	18,021	1,062	6곳 산정
충북	1	-	-	-	-	-	-	-
충남	4	해당없음	-	-	_	_	-	5곳 미만
전북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2	해당없음	-	-	_	_	-	5곳 미만
경북	0	-	-	-	-	-	-	-
경남	5	해당없음	-	-	_	=	=	5곳 미만
제주	0	-	-	-	-	-	=	-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육계공급량에 따라 육계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소비자가격(18,000원)*육계공급량*1.7(전체 매출액에서 육계의 비율 30%)]

- [당사는 다수의 가맹점이 포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육 판매량으로 추정합니다. 총매출에 닭의 판매금액이 30%가량 차지하고 다른 매출(주류 및 사이드메뉴)의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위식에 따라 추정합니다.]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2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26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출을 파악할 수 없는 1개 가맹점도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80개가 아닌 실제 5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식:

8. oh늘통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oh늘통닭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2	110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③			비용(단위: 가세 미포	<u>-</u>	비고 ^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113,657	113,657	-	
광고	인터넷	2023.1월- 2023.12월	110.614	110.614	_	손익계산서참조
판촉	_		3,042	3,042	_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국민은행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국민은행 본사	02-2073-54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u>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u>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대현푸드빌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 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oh늘통닭 (구)삼성통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분 지급 대상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200]				
상권보장비	4,000	계약 후 다음날까지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상권조사소요된 실제비용, 추후지역에 상권보장비	
상표사용료	6,000	예치.		상표전용권에 대한 비용	
교육비	2,200		교육 받기 전에 해지 시	35년의 닭기술전수와 영업노하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계약위반사항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4,200
상표사용료	6,000
상권보장비	4,0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 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20평기준)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 액 ^③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④
총계		[50,500]	2531			
필수설비 (정착물)		18,000	90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의자,주 방집기 등등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별지 참조	30,000	15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평당 150만원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주)대현푸드빌	2,500	125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소모품비, 메뉴북,전단지 ,유니폼 등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삼포개발님 (저화:02-900-8861)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 게 동의 여부를 구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매저시어가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3~11·11·11·11·11·11·11·11·11·11·11·11·11·	독기의 왕의 실격자(#기 없을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oh늘통닭]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 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교∰
상표사용료		해당없읍				가맹비포함
리스료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1,000				재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3,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가맹비포함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협력업체	14,000~ 16,000	교체・보수 후 5일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교체 · 보수 비용			이내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 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 을제외한 나머지			27페이지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대현푸드빌	연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 까지		물류비용을 연체하였을 때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주)대현푸드빌 (02-900-8861)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주)대현푸드빌 (02-900-886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	계약종료시		계약연장의 사유	상권보장료, 상표사용료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 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 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



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오늘통닭]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대현푸드빌]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총액	상권보장료, 상표사용료,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9,700	7,700	2,000(부가세 없음)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oh늘통닭 (구)삼성통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oh늘통닭 (구)삼성통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제한내용 및 조건 ^②	위반시 책임 [®]	비고④
후라이드통닭			
양념통닭			
마늘통닭			
간장통닭			
골뱅이와사리			
고추마늘닭			
베리핫치킨			
모듬소세지			
대구포와땅콩			
한치와땅콩		1회 위반: 구두 경고	
순살후라이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치즈베이컨포테이토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치즈돌돌맵닭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콘치즈닭			
숙주샐러드통닭			
순살파닭			
순살마늘닭			
순살양념			
순살강정			
오뎅탕			
모듬포			
번데기탕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후라이드통닭	15,000	가격변화하면,공문과 홈페이지에 공지	2016년 12월 기준
양념통닭	16,000	"	"
마늘통닭	17,000	"	"
간장통닭	16,000	"	"
골뱅이와사리	16,000	"	"
고추마늘닭	18,000	"	"
베리핫치킨	18,000	"	"
모듬소세지	14,000	"	"
대구포와땅콩	11,000	"	"
한치와땅콩	11,000	"	"
순살후라이드	16,000	"	"
치즈베이컨포테이토	14,000	"	"
콘치즈닭	19,900	"	"
숙주샐러드통닭	19,900	"	"
치즈돌돌맵닭	19,900	"	"
순살파닭	17,000	"	"
순살마늘닭	18,000	"	"
순살양념	18,000	"	"
오뎅탕	12,000	"	"
모듬포	15,000	"	"
번데기탕	9,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 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중월만 협중 범위 ·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고기 또는 닭고기튀김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오늘통닭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
인구 1만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8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 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 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 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 동되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 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 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오늩통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오늘통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_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오늘통닭]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



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 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 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 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 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 [오늘통닭]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 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 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33조 2항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	



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
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넌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 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³⁾	비고 ^④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 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휴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및 해외지역에서 귀하가 [오늘통닭]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닭튀김이나 닭구이를 판매하는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문의:
	업종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02-900-8861)
\subset) 닭요리가 있는 호프집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오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비 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1회	본사 슈퍼바이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월1회	본사 슈퍼바이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1회	본사 슈퍼바이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oh늘통닭 (구)삼성통닭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광고 성격 ^②	부담비율		분담 절차④	비고 ⁵	
一下世	장고 성격학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한 함 설계 *	H1-12-	
라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매점이 과고참여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2010년의 경우 행사별로 가맹점사업자당 20~50만원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 드·멤 버십 제휴서 비스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 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 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 지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일천만원 (₩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 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 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 고
이 시비리노객로는 이 안함하사일지렵상업한주 보이 등화적정우이의로 가의을기나인 현장경에 지는 기리노객로는 위전으여업상하거적에 지는 이 한함하사일지렵상업한주	○ 비원기비외건에되체용.사일관맹자가실에소는 판용데비집체제내사 의 비맹통무가업추 라인사비교 실내사 의 비맹통무가업추 를함 되어 이 공 (이 의용한축소는 의단 업성하점가공시따요	반하지 않 는 점포환 경개선 : 20% ○ 점 포 의 확장 또는 이전을 단하는 점 반하는 점 포환경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서류 첨뷔) →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 서분할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의 대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서류 첨뷔) → 3차에	の	



비용은 제 외)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알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3 차: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우에는 환 수 가능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금액 ^④	비고 [©]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오픈인원 파견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오픈인원 수	오픈일로부 터 3일간	100만원 한도	
시식차 무상대여	가맹점매출증진 을 위해 필요한 시식차 무상대여	전가맹점 분기에 1번가능	가맹계약기 간	필요인원, 시식용물품 가맹점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 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의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OO팀 (02-900-88 61)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문의: OO팀 (02-900-88



고객관리,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된	
I ''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통상의	
위생관리,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	경영지도	
교육훈련, 회견	· 명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비용을	61)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초과한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부분에	
대한 경영지도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오늘통닭]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①	신용제공자 ^②	금액 ³	신용 형태 ^④	신용제공 조건 ⁵
자금 지원	㈜하이트맥주	최대 3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프랜차이즈 우대대출	㈜하이트맥주	최대 5천만원	담보 대출	가맹본부 확인 신용등급 5등급이상 5천만원 이상 담보 제공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900-8861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오늘통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귀하가 [오늘통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차	조리에 필요한 위생교육 및 주방보조 교육
T월사	실질적인 후라이드, 양념튀김교육
2일차	실질적인 후라이드, 양념튀김교육
3일차	실질적인 후라이드, 양념튀김교육 서비스 교육 및 손님응대교육 튀김 교육 외에 다른 요리 조리교육 마무리 최종 교육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2조에 따라 7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2조에 따라 7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900-886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1. 거래상대방 강제 리스트



2.거래상대방 권장 리스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18.>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18일 함포 극당에서?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十工(ペトエ)		[단위한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770 1 1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 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			
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기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oh늘통닭(구)삼성통닭』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 そ 3. ラ ③기 ⑥기 4. フ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 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시 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하 나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 나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년 월 차 : ①가 ^r 나실 ④가맹 한 절차와 : 화번호 :	일 필본부의 일반현황 ② 점사업자의 부담 ⑤영 ⁽ 소요시간 ⑦교육·훈련	업활동에 대한 조건	
	가맹본부 :	(인)	수령자 : 주민등록번호 :	(인)	
본인	정보공 은 『oh늘통닭(구)삼성통닭』	개서 수	·명확인증(본사보관	<u> 연용</u>)	귀사의
정보 또는	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의 영업1	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로 유출
2. そ 3. ァ ③기 ⑥기	성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성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세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 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시 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나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	년 월 차 : ①가다 -실 ④가맹 한 절차와 :	<u>일</u> 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역	업활동에 대한 조건	
5. <i>7</i>	h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		(01)	
	가맹본부 :	(인)	수령자 :	(인)	